



2024년 금속노조 중앙교섭 의견접근

16일, 11차 중앙교섭에서 의견접근 금속 최임 시급 10,150원·타임오프 노사자율 원칙 확인 성과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좋은 일자리 창출, 이주노동자 차별 금지, 노사 자율의 원칙을 감안한 타임오프 개선 노사공동 대정부 요구 등에 합의하고 2024년 중앙교섭을 마무리했다.

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7월 16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11차 중앙교섭을 열었다. 금속 노사는 이날 본 교섭을 정회하고 여러 차례 축소 교섭을 벌인 끝에, 19시 20분쯤 본 교섭을 속개해 중앙교섭 의견접근안에 합의했다.

금속 노사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통상시급 10,150원과 월 통상임금 2,293,900원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해당 금액의 적용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노사는 중앙교섭 통일 요구 <좋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금속산별협약 제41조를 ▲신규채용 확대 협력 ▲탄소배출 저감과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일자리 합동 조사, 자연감소 인원과 일자리 신설 필요 시 신규채용, 여성 퇴직 일자리는

여성 신규채용 ▲기간제·단시간 노동자가 있는 부서에서 신규채용 시 결격사유가 없으면 해당 노동자 우선 채용 ▲만 29세 이하 청년을 50% 이상 채용 등으로 개정하는 것에 합의했다.

통일 요구 <근로시간면제제도 개선 노사공동 대정부 요구>는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사)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근로시간면제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노사 자율의 원칙과 관행을 감안한 근로시간면제제도의 개선을 공동으로 요구한다’는 문구로 노사가 최종 합의했다.

금속 노사는 중앙교섭 요구인 <이주노동자 차별금지>와 관련해 금속산별협약 ▲제23조 ‘임금차별 해소’ 2항 신설 ▲제47조 ‘사내 하청·이주노동자의 처우개선’ 1항 개정에 합의했다.

또한 제50조 ‘이주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신설해 ▲취업규칙 제·개정, 근로계약서 체결, 임금명세서 발급 등의 경우에 자국어로 번역한 문서를 제공 ▲이주노동자

에게 숙소·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노동부에서 정한 공제율 초과 안 함 ▲정주노동자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 안 함 등에 합의했다.

금속 노사는 기후위기와 기술혁신에 따른 노동수요 변동,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라는 시대 과제에 함께 대응한다는 취지를 담은 중앙교섭 요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에도 합의했다.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은 의견접근안에 서명하고 교섭을 마치면서 “금속노조 요구안은 노동자의 삶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금속 노사 중앙교섭은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고, 제도를 발전해내기 위한 큰 과정이라고 본다. 모두 고생하셨다”는 소회를 밝혔다.

박근형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장은 교섭을 마무리하며 “노사 모두가 노력하고 결단한 결과, 합의에 도달한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 노조가 합의를 결단한 만큼 최선을 다해 합의 이행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고 밝혔다.